202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 4.

농 림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

Ⅱ. 심사경과 ·····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3

Ⅳ.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지 ····· 9

Ⅴ. 심사결과 ····· 10

Ⅵ. 소수의견 요지 ····· 10

Ⅶ. 부대의견 ····· 10

[별첨] ····· 11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3월 31일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4. 6.)

-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6.)

-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 개 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4개 세출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조 3,860억원 증액하였으나, 회계·기금 간 전출을 제외한 세출사업의 본예산 대비 증액규모는 8개 사업 2,658억원 규모임.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 (현계획) (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A
총 계		6,940,241	17,326,253	10,386,012	149.6
농특회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7,824	순증
농특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0.3
농특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15,600	19,800	4,200	26.9
농특회계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6.2
농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686,805	5,535,578	4,848,773	706.0
농특회계	축산발전기금 전출	145,500	210,500	65,000	44.7
농특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	204,030	254,030	50,000	24.5
농특회계	농지관리기금 전출	500,000	558,771	58,771	11.8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 (현계획) (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A
농특회계	수산발전기금 전출	128,792	158,792	30,000	23.3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793,367	8,861,055	5,067,688	133.6
지특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30.2
농지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421.5
축발기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250,000	315,000	65,000	26.0
농안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716	172,716	50,000	40.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

□ 첫째, ‘세입’ 중 ‘농어촌특별세’ 목은 본예산(8조 4,988억원) 대비 5조 1,223억원이 증액된 13조 6,212억원이 편성되었음.

□ 추경안은 이 중 4조 8,488억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외 분야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목적인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등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78억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상 일부 유종의 차액 지급 기준가격이 최근 가격 추이 대비 높게 설정되어 농가 지원 효과가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지원 기준 및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본예산(156억원) 대비 42억원 증액된 198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융자)’ 사업은 본예산 대비 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88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두 사업 모두 농가 지원 및 물가 안정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구입 융자지원 사업은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비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재정투입 효과가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우수기업육성 사업’은 본예산(797억 9,500만원) 대비 72억원 증액된 86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실질적 피해의 지역별 편차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섯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추경안에서 본예산(2,340억 7,500만원) 대비 706억 3,000만원 증액된 3,04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이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점,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의 부합 여부,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준비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사업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여섯째,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본예산(139억 4,400만원) 대비 587억 7,100만원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면적에 대해 실시되므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추후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일곱째,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계획액(2,500억원) 대비 650억원 증액된 3,15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사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덟째,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계획액(1,080억원) 대비 500억원이 증액되어 1,58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2020년 이후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비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연례적인 증액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Ⅳ.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979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으로 **671억 8,100만원**을, **사료산업종합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400억원**을, **농업용비닐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으로 **154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 **706억 3,000만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70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Ⅴ. 심사결과

○ 수정의결

[별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Ⅵ. 소수의견 요지

(전종덕위원)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Ⅶ. 부대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이 대형유통경로보다 전통시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에서 전통시장 예산 비중을 확대 조정한다.

[별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0,200	-	70,200

Ⅱ.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현계획 (A)	증감액 (B)	변경안 (C=A+B)				
1	농식품소비기반조성 (3041-300)	122,716	50,000	172,716	242,916	70,000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 및 중소유통경로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편성이 요구되므로 700억원 증액 필요 * 700억원 = 2025년 예산(추경) 2,280억원 - 2026년 추경안 1,580억원	
						200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업체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 2억원 증액 필요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사항 없음

Ⅲ. 부대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이 대형유통경로보다 전통시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에서 전통시장 예산 비중을 확대 조정한다.